

NEWSLETTER784

Jan 26, 202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및 개정사항 국내 수용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청에서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발표하여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개정 사유

- HS 해설서 오류 사항 수정 및 WCO 제69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 국내 수용

II. 주요 개정내용

1. HS 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주 규정, 호 및 소호 용어와의 불일치 사항 수정
- 오타, 누락 문구 및 알기 쉬운 용어 사용

2. HS 품목분류의견서

- 니코틴 함유제품 (2403호 및 2404호), 피부 검용 샴푸(3305호),플라스틱 옷걸이(3924호),타이어 (4011호) 등 29개 품목 신규 추가

3. 규제 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III. 시행일자

1. 시행일자 : 2023. 1. 20.
2. 적용대상 : 고시 시행(2023.01.20.)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 [붙임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 [붙임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붙임4] 별표1_HS해설서_신구대조표
- [붙임5] 별표2_HS품목분류의견서 개정문

| Contact



소은혜 관세사

T 02-6011-3012
E yhso@esein.co.kr



강희선 팀장

T 070-4353-1596
E hska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